

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5. 9. 8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8월 31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5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5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9. 8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안이유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여
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한 내용 (안 제2조)
 -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의 교부금 또는 출연금 등
- 기금의 용도 (안 제3조)
 -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
- 기금의 운용 · 관리 (안 제4조)
 - 기금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하고,
 - 구 금고에의 예치, 유가증권의 매입 등을 통하여 기금의 증식을 도모함
- 기금의 운용심의 (안 제5조)
 - 기금의 조성,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은 구에 설치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함
- 지원대상 (안 제6조)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에게 기금을 지원함

-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규모 및 상환조건에 대한 규정(안 제8조)
 -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금액 결정
 - 기금의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하여야 함
 - 이자는 연 3퍼센트, 연체이자율은 연 15퍼센트를 적용함
-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 (안 제10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일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